

울산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94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기영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민찬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돈필, 장동완

변론 종결 2020. 6. 25.

판결 선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8,483,562원, 피고 C는 1,294,7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6. 18.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걸려 온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2019. 6. 19.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 피고 C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자신들의 계좌에 취득한 원고가 송금한 돈에 대한 예금채권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피고들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의 처분권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의 2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8,483,562원, 피고 C는 1,294,74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 B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보내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 B의 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시키는대로 하면 실적을 쌓아 주겠다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 B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곳으로 다시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이에 속아 원고가 송금한 돈을 F과 주식회사 E에게 이체하였다.

다. 피고 C의 주장

자신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적은 있으나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2019. 6. 19.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원고가 송금한 4,900만원 중 3,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나머지 1,9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이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2019. 6. 19. 피고 C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원고가 송금한 위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곳으로 송금하였거나 2019. 6. 20.경 일부 남아 있는 돈 3,120,124원을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가 원고가 송금한 돈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을가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피고 B은 2019. 10. 15. 및 2019. 12. 10.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각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 C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입건된 사실조차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에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원묵